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05호 2023. 9. 21.(목)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35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1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42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430호(2023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 안내) 25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433호(도시계획시설(도로:소2-2호선, 소1-1호선) 공사완료 공고) 30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79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31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 인사청문의 절차, 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제4조 ~ 제9조) ○ 인사청문의 결과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10조 ~ 제13조)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14조 ~ 제1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3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
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
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회)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 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 회부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

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 질의요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②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투명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구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 동별 여건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을 자율화

- 주민자치위원 해촉 절차 및 사유 정비

: 현행 해촉 의결 기준을 표준안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자치회 내부 문제 발생 시 외부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간 지원조직 근거 삭제

: 주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단체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 근거 삭제

○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사업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 등 절차 준수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미이행 시 구청장이 해당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표준안을 따른 형식 및 용어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 자치행정과 (☎749-7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자치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749-7222, FAX 749-7219

○ E - mail : new8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

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주민자치회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 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 업무: 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처리
4. 그 밖의 업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주민

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는 업무의 수행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에서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법인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제22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천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2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순위도 함께 정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

⑧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천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며, 선거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 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⑦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보궐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 ⑧ 제6항에 따라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11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지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 근무자 및 자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사무국장과 사무국 근무자, 자원활동가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해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총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총회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인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해 그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회의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재해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회의 참석자는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

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회의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또는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촉할 때에 그 해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요청이 의결된 날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6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각 동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각 동 자치회장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30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 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이 종전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결원 보충 등을 사유로 위촉된 경우에는 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그 임기 또는 연임기간 만료 후 이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2023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 안내

연수구에서는 안전한 음식문화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에 한한다.

라. 지원요건

공통사항

- 신청일 기준, 관내 영업신고(신규 및 영업자지위승계일 기준) 업소에 한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에 따른 대상
 - ▲ 우수업소 ▲ 좋은식단 실천업소 ▲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 덜어먹기 실천 등 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우선 선정
- 면적 200㎡ 이하 업소
 - * 단,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및 ‘연수구 브랜드 식품 개발 및 육성 지원’은 면적 제한 제외
- 2022년 주방문화개선 지원 업소는 2023년 지원업소에서 제외

사업별 지원조건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및 연장 신청 업소에 한함
 -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우선 지역 업소 우선 지원
 - 식중독 발생 우려 또는 위생관리 미흡 품목 취급 음식점 우선 지원

라. 사업예산 : 57,500천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 1)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희망) 업소 중 일반분야 평가부분에 해당되는 사항 관리에 소요되는 청소 자금을 50만원 한도 내 무상 지원(자부담 없음)
- 2) 주방(냉장고 포함) 정리수납에 소요되는 자금을 50만원 한도 내 무상지원(자부담 없음)

2.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가. 지원범위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일반분야」 중 객석/객실, 조리장* 분야 청소비 지원

* 객석/객실 : 천장, 벽, 바닥, 선풍기, 에어컨, 창문, 창문틀 등 객석/객실 내 청소

** 조 리 장 : 냉장·냉동고, 냉방기, 식품창고 등 조리장 내 청소

2) 주방 수납 컨설팅

- 주방(냉장고 포함) 수납 정리

나. 신청방법

1)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방문화개선 참여 신청 및 계획서(서식 1) 1부.
- 현장사진 및 견적서·타 업체 비교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각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지정신청서(신청 시 / 서식 2, 3) 1부.

2) 개선완료 후 제출서류

- 주방문화개선(식문화개선실천 등) 자금지원신청서(서식 4) 1부.
- 청소 및 정리 현장사진 1부.
-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 사업 평가 설문 조사서(서식 5)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접수방법 및 문의처

- 방문접수 : 연수구청 3층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032-749-7953)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신청자) 공고모집	연수구청 홈페이지
② 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사업자(신청자) → 구(區) 위생정책과
③ 서류검토, 현장 확인	구(區) 위생정책과
④ 사업자(신청자) 선정	위원회 검토 및 선정
⑤ 선정결과 통보	구(區) 위생정책과 → 사업자(신청자)
⑥ 주방문화개선 추진	사업자(신청자)
⑦ 결과보고(증빙자료 제출)	사업자(신청자) → 구(區) 위생정책과
⑧ 구비서류 검토, 현장 확인	구(區) 위생정책과
⑨ 지원금 지급	구(區) 위생정책과 → 사업자(신청자)

4. 선정평가

가. 지원업소 선정

주방문화개선 신청업소 공개 모집 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결에 따라 지원 업소를 선정한다.

나. 서류 및 (사전·사후) 현장 확인

-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2) 개선 계획 및 지원신청서 등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단, 위생지도팀 및 송도위생팀 계도장 발부 업소 지원 신청 시 사전 현장조사는 해당 팀 출장복명서로 갈음한다.
- 3) 시설 개·보수에 따른 공사 시 사전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사항 등을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 실시한다.
- 4) 시설 개·보수 등 공사완료 후 사후 현장 확인 시 제출 서류에 따라 개선된 시설·설비 등을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 실시한다.

다. 최종선정

- 1) 지원업소 선정은 위원회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
- 2) 적정성이라 함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개선 계획서의 실효성,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3) 선정 시에는 영업의 종류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영업의 형태 중 한식, 중식, 일식 등의 분포도 및 영업장 규모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4)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출 서류의 구비, 진위 여부, 개선 계획의 실효성 등은 내부 직원(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이 검토한다.

5.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 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가 직접 수행하며,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은 사후 교부한다.
- 다.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혹은 교부받은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라. 지원신청 사업자는 일정기간(식문화개선 실천 1년, 그 외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2) 업종 변경 등을 위해 폐업 후 관내에 신규 영업 신고한 업소에서 지원받은 사항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의거 관내에 업소의 소재지 이전 후 지원받은 사항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 4)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상 지위승계 후 승계자가 지원받은 사항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 마. 지원신청 사업자는 식사문화개선 지침을 이행하도록 종업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구(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4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2-2호선, 소1-1호선)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2-2호선, 소1-1호선】사업의 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9-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소로2-2호선 외 1개노선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2-2호선 : 연장(L)=184m, 폭(B)=8~16m
 - 소로1-1호선 : 연장(L)= 73m, 폭(B)=10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대치동, 케이티엔지 빌딩)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9. 14.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9.1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21.05.24	송도힐즈로 시작점에서 열번째 분기도로	동춘동 산65-21 외 4필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힐즈로10길 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9.1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동춘동 9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